

정책임은 인정하나, 양평교~신정 제1교구간을 영등포지역으로 통과하도록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영등포구 양평동·문래동 지역주민의 가시권 및 조망권의 침해, 건강권, 환경권,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노선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합리적인 건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 조정하기 바람.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001. 9.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동대문운동장상가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원 번호	63
----------	----

2001년 9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원인 : 홍연표(성동구 성수2가 3동 289-3 성수APT 8동205호)  
의 49명
- 나. 소개의원 : 최명옥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1. 6. 13
- 라. 회부일자 : 2001. 6. 14
- 마. 상정일자 : 2001. 9. 5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오랜 기간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여러 점포들을 허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처해 있음.
- 이에 앞서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청원인들에게 계속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넘어 128%를 인상요구하였고 청원인들은 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혼란에 이에 응함.

○ 그렇지만 서울시는 99년 2월 19일 정책회의를 통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토록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 청원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

○ 청원인들은 96년 7월 3일의 서울시 정책회의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2002년 월드컵 특수에 대비하여 점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MF라는 시련도 겪어야 했음.

○ 동대문운동장 상가는 6~7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처럼 국제적인 거대한 스포츠 타운이 아니었으나 그 동안 청원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국제적인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활발한 스포츠상가의 대표적인 타운으로 성장하였음.

○ 따라서 거대한 스포츠 타운을 형성시킨 청원인 나름대로의 공로도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해 청원인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 상거래 신용도도 높여주는 의미에서 현재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종료기간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청원임.

3. 취지설명 요지(최명옥 의원)

○ 청원인들은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점포를 허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 스포츠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곳 상가는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계속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128%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점포사용 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키로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

○ 그간 청원인들은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 수리와 사업영역 확대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기간 중 많은 국가들에 스포츠용품 쇼핑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취재대상이 되고 단체주문 등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p>감안하여 금년말로 만료되는 점포 사용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p> <p>4.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 (전문위원 : 윤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동대문운동장상가는 서울시와의 수의 계약(계약만료일 2001.12.31)에 의해 64개 점포에 51명의 상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li> <li>○ 동대문운동장상가 임대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취득</li> <li>-93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 계약 임대특혜 논란</li> <li>-93년 11월 30일 : 96년부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li> <li>-95년 12월 ~ 96년 4월 청원에 대한 시의회 권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인들의 권리보호 측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증대 등 양측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에 권고"</li> </ul> </li> <li>-96년 7월 3일 : 정책회의 결정(사용료 현실화)</li> <li>-96년 11월 7일 : 수의계약 시방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현실화 기준안 마련(95년도 사용료 기준 127.3% 인상)</li> </ul> </li> <li>-99년 2월 19일 : 정책회의 결정(유예기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정리 및 명도를 위하여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단 2000.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조건</li> </ul> </li> <li>-99년 3월 24일 : 스포츠상가 사용허가 시방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조서 작성의 신속적 운영. 2000.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li> </ul> </li> <li>-99년 4월 22일 : 동의각서 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12월말까지 점포반환 및 2000년 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 약속</li> </ul> </li> <li>-2000년 8월 31일 화해조서 전원제출</li> <li>-2000년 12월 18일 화해조항 합의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재산(점포)을 명도함.</li> </ul> </li> <li>-2001년 6년 13일 동대문스포츠상가 임대</li> </ul> </li> </ul>	<p>기간 1년연장에 관한 청원 제출(최명옥 의원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계약은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신청을 하는 제도로,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li> <li>○ 99년도 서울시와 청원인간에 이뤄진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은 행정행위로서의 공신력을 갖추었고 민사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매매, 위탁 등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오늘의 거대한 스포츠타운을 형성시킨 청원인 나름대로의 공로도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해 그간에 이루어놓은 국제상거래의 신용도도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요망됨.</li> <li>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li> <li>6. 토론요지 : 없음</li> <li>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li> <li>8. 심사결과 : 의견서 체택 본회의 부의하기로 함.</li> <li>9. 소수의견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임대 점포주와 점포정리 및 명도를 위한 유예기간을 2001년 말일까지 부여하고 동의각서 공증 및 화해조항 합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임대사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며, 청원내용을 수용할 경우 특혜부여의 논란소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li> </ul> </li> <li>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의 견 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명 :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li> <li>○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li> <li>○ 채택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인들은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점포를 허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li> </ul> </li> </ul>
---	--